

광주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3가단54555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## 전 문

**원고**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

**피고**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명

**변론 종결**2024. 8. 1.

**판결 선고**2024. 10. 17.

## 주 문

- 피고와 망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0. 15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에게 각 3/7 지분에 관하여, E에게 각 2/7 지분에 관하여, F에게 각 2/7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피보전채권의 존부

#### 가. 쟁점

원고가 망 C(2022. 3. 3. 사망)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321호에 기한 판결금(대여금) 채권이 존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, 피고는 망 C이 목포시 G 아파트 H호로 위 채권을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.

#### 나. 판단

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와 망 C 사이에 '차용금 217,000,000원을 양자간 합의하에 망 C의 아들(F) 소유 목포시 I아파트 J호의 물건을 명도하기로 한다'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, 위 아파트 J호가 원고에게 명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(오히려 위 아파트는 2013. 11. 12. K, L에게 매도되었을 뿐이고 위 매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 한 증거도 없다).

따라서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2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, 망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매도한 2020. 10. 15.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.

갑 제10, 11,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망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의 각 표 기재와 같은 점,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, 2020. 10. 15. 당시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,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C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데, 이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,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지 않고 망 C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망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#### 가. 적극재산

## 1) 부동산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 | 전남 나주시 M 임야 9223m <sup>2</sup>  | 23,703,110  | 35,554,665 |
| 2  | 전남 나주시 N 임야 974.4m <sup>2</sup> | 8,642,928   | 12,964,392 |
| 3  | 전남 나주시 ㅇ답 1653m <sup>2</sup>    | 16,034,100  | 24,051,150 |
| 4  | 전남 나주시 P 임야 702.4m <sup>2</sup> | 6,511,248   | 9,766,872  |
| 5  | 전남 나주시 Q답 1944m <sup>2</sup>    | 18,856,800  | 28,285,200 |
| 6  | 전남 나주시 R 임야 198m <sup>2</sup>   | 332,640     | 498,960    |
| 합계 | 74,080,826                      | 111,121,239 |            |
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1  | 전남 나주시 S 도로 102m <sup>2</sup> | 326,400 | 489,600 |
| 2  | 전남 나주시 T 도로 20m <sup>2</sup>  | 64,000  | 96,000  |
| 합계 | 390,400                       | 585,600 |         |

## 2) 예금 등

|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1  | U은행(나주시점)  | 예금    | 5,848     |
| 2  | 기업은행(광주지점) | 예금    | 110       |
| 3  | V은행(W)     | 예금    | 13,078    |
| 4  | X          | 미상    | 61        |
| 5  | Y조합(마한)    | 예금    | 6,394     |
| 6  | Y조합(마한Z)   | 예금    | 3,581     |
| 7  | AA생명       | 책임준비금 | 134,910   |
| 8  | AA생명       | 책임준비금 | 5,263,760 |
| 9  | AB생명       | 실손의료비 | 660,176   |
| 10 | AB생명       | 실손의료비 | 60,000    |
| 11 | AC조합       | 출자금   | 266,319   |
| 합계 | 6,414,237  |       |           |

② 소극재산 :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321호 판결금(21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

2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)

### 3. 피고의 선의 여부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, 피고는 망 C의 배우자인 D의 자녀인 점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당시 망 C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어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던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.

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4. 원상회복의 방법

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는데, 여기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.

다만, 망 C이 2022. 3. 3. 사망하였고, 배우자 D, 자녀 E, F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,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D(3/7 지분), E(2/7 지분), F(2/7 지분)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### 5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**판사윤봉학**

별지